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주요 변경사항

유럽연합, 식품 향미료 목록 갱신

- 2008년 12월 16일 향료 물질에 관한 규정 (EC) 1334/2008이 제정되었고 향미 물질 목록이 수록된 이 규정의 부속서 I은 2012년 이행 규정 (EU) 872/2012에 의해 채택되어 작성됨.
 - 향미료란 음식이나 음료에 특정한 맛이나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음식의 맛과 향을 향상시키거나, 제품의 일관된 향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됨. 또한, 저장 기간이 긴 식품에서 원래의 향미를 보존하거나, 저열량 식품에서 맛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첨가되기도 함.
 - 2012년 향미료 목록이 채택될 당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제한된 데이터로 인해 일부 향료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수 없었고, 이에 이 향료는 관련자가 추가 데이터를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향미료 목록에 포함됨.
 - 이 중 일부 관련자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하였고 EFSA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향미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
 - 1) 2-Phenylcrotonaldehyde (FL No 05.062)
 - 2) 5-Methyl-2-phenylhex-2-enal (FL No 05.099)
 - 3) 4-Methyl-2-phenylpent-2-enal (FL No 05.100)
- 하지만 EFSA는 이 물질들은 이수체유발성(Aneugenicity)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림. 이수체유발성(Aneugenicity)이란 정상

세포의 염색체수를 변화시켜 유전적 이상이나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 관련자들은 이수체유발성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EFSA가 이에 대해 재평가할 때까지 물질 1), 2) 및 3) 은 사용 금지됨. 단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 이 향료가 포함된 제품이 현재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유통을 위해 운반 중인 경우는 시판 가능.

- 1), 2) 및 3) 을 제외하고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향미료에 대한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추가 검증자료가 미제출된 아래 향료는 향료 목록에서 삭제되며 사용금지 됨. 단,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 아래 목록의 향료가 포함된 제품이 현재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유통을 위해 운반 중인 경우는 시판 가능.

- 4) 2-Phenylpent-2-enal (FL No 05.175);
- 5) 2-Phenyl-4-methyl-2-hexenal (FL No 05.222);
- 6) 2-(sec-Butyl)-4,5-dimethyl-3-thiazoline (FL No 15.029);
- 7) 4,5-Dimethyl-2-ethyl-3-thiazoline (FL No 15.030);
- 8) 2,4-Dimethyl-3-thiazoline (FL No 15.060);
- 9) 2-Isobutyl-3-thiazoline (FL No 15.119);
- 10) 5-Ethyl-4-methyl-2-(2-methylpropyl)-thiazoline (FL No 15.130);
- 11) 5-Ethyl-4-methyl-2-(2-butyl)-thiazoline (FL No 15.131)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023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0234

2. 시사점

- 현재 유럽은 유전독성, 발암 유발 물질 등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면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음. 또한 안정성이 모호한 물질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용을 해주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용금지’ 또는 ‘조건부 금지’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은 점점 엄격해

지고 있음. 따라서 관련 이슈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관련 업체는 관련 소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금지 향미료를 정확히 숙지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유럽연합, 농약 옥사밀의 최대잔류치 수정

- 옥사밀(Oxamyl)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2023년 5월 1일에 사용승인 만료와 함께 위험성 검증으로 재승인 불가 됨. 또한 옥사밀을 포함 하는 모든 제품은 2023년 11월 1일까지 회수됨. 승인 갱신 조치에 따라, 옥사밀의 사용은 금지되었으며 이와 함께 최대 잔류 농약 성분 허용 기준치(Maximum Residue Levels, MRL)는 측정한계(Limit of Determination, LOD)수준으로 낮춤. 측정한계(LOD)란 특정 분석 방법으로 잔류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의미함.

2. 변동사항

- 옥사밀의 수정된 MRL

코드 번호(Code number)	종류	MRL (mg/kg)
0110000	감귤류의 과일(Citrus fruits)	0,001~0,002
0120000	견과류(Tree nuts)	0,01
0130000	인과류(Pome fruits)	0,001
0140000	핵과류(Stone fruits)	0,001
0150000	장과류(Berries and small fruits)	0,001
0200000	신선 또는 냉동야채 (Vegetables, Fresh or Frozen)	0,001~0,002
0300000	두류(Pulses)	0,01
0400000	지방종자(Oilseeds and Oil fruits)	0,01
0500000	곡류(Cereals)	0,005
0600000	차, 커피, 허브 등	0,01~0,05
0700000	홉(Hops)	0,05
0800000	향신료(Spices)	0,05
0900000	당료작물(Sugar Plants)	0,001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0331

3. 기타 주의사항 등

- 옥사밀의 수정된 MRL에 대한 규정은 2024년 2월 8일에 발효되었으나, 관련 식품 업체 등이 옥사밀의 새로운 MRL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4년 5월 11일부터 적용됨. 관련 업체는 수정 사항을 숙지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 - 기준월(2월)

- 반조리 식품, Food Preparations (2024.02.02.)

-통관번호 2024.0746

-식별불가능한 유전자 변형 조직의 검출로 스페인에서 통관 거부 조치.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